

세계 인권선언 51주년 기념, 베트남연대 제 1차 베트남 인권세미나

인권정보자료실
CPel.1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베트남 전 당시 파월 한국군의
양민학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 일시: 1999년 12월 10일(금) 오후 4시
- 장소: 여성사회 교육원 강당



주최: 베트남 연대 (나와 우리 /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 함께 가는 사람들)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사회 방현식(소설가·「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

발제

■

→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 김남일(소설가·「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 2

→ 베트남전 개괄 및 답사보고 - 김현아(「나와우리」 대표) → 6

→ 해외사례 보고 - 한상진(「함께가는 사람들」 총무) → 27

→ 전쟁을 통해 바라본 역사인식 - 혜진스님(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베트남전 당시 파월 한국군의 양민 학살 의혹의 진상을 밝혀라!

20세기가 저물고 있다.

전쟁, 말살, 배반, 갈등, 모략, 음모, 은폐, 고문, 학살, 증오, 속도, 소외, 물질, 탐욕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끔찍한 낱말로 이 한 세기를 증언할 수 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낱말의 주인이면서 한번도 진지하게 그 점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20세기를 접는 이 시점에서 떠올리기 싫은 옛일 하나를 기억하고자 한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영원히 잠들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기억. 그러나 기억하려는 자에게 영원히 잠들어버린 기억이란 없다. 용기를 내자. 우리가 남긴 그 사진첩 속에 얼룩처럼 떨어뜨린 끔찍한 낱말들을 다시 닦아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므로. 우리 자신이어야 하므로.

최근 우리는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전투와 상관없는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했다는 증언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베트남인들은 한국군이 아무런 저항능력도 없는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 친척을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수치를 들어 증언했다.

"따이한 병사들이 토끼몰이하듯 주민들을 암자로 몰았어요. 갑자기 병사 한 명이 주민들 속에서 응의 아들인 코(당시 10살)를 불러냈어요. 그가 뭐라 물었지만,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애는 고개만 흔들었지요. 그러자 애에게 총을 쏘았어요."

"따이한 군인들이 부녀자들과 남성들을 두 패로 갈라서 앉혔어요. 그리고는 우물 옆에 모여 앉은 여성들 앞 3m 거리에 세대의 다연발 총을 설치했어요." 이들은 한국군들이 먼저 우물가 쪽으로 다연발 총을 쏘았다고 한다. 여성들 중에는 단 한명의 생존자도 없었다. 그 다음에 남성들을 땅굴 속으로 밀어넣고 수류탄을 던져넣었다. 세 시간 만에 마을 주민 143명이 살해됐고, 이 과정에서 단 8명만이 주검더미에 깔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뿐이다."

"한국군이 이곳에 쳐들어왔을 때, 일부 주민들만이 집에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에 일을 하러 갔었다. 한국군들은 주민들을 여러 그룹으로 모아놓고 총을 뒤었으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되어서야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전하기를, 한국군들이 총을 쏘자, 어떤 사람들은 위로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쓰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목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오후 6시, 일을 나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죽은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하였다. 어떤 집의 경우엔 20여 명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였고, 진창구덩이 속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사람들의 밑에 깔려 여전히 살아있기도 했다. 어머니의 젖을 찾아 기어다니던 아이들은 모두 죽었고, 사람들의 밑에 가려 숨죽여 있던 7명의 아이들은 살아났다."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끔찍스러운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다.

노근리 학살을 자행한 미군을 비난해 온 우리가 어떻게! 아니, 오천년 역사 속에서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우리가 어떻게!

당대의 국내외 정치 상황 속에서 베트남전 파병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설마 한국군이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양민들에게까지 총부리를 들이댔다고는 도무지 믿고 싶지도, 또한 믿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의 증언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적지않았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외교부장이었던 응엔티빈은 70년대 초반 한 비동맹 국가 회의 석상에서 한국군의 '공식적' 양민학살 건수가 약 3천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 통일베트남의 문화통신부가 조사해 확보한 명단에는 현재까지 희생자가 5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과 증거가 아무리 구체적이고 생생하더라도 선뜻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선을 가로막고 서서 다투는 운전자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물며 전쟁, 그것도 비정규전이라는 베트남전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로부터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다.

이제 우리는 한때 총부리를 겨누던 베트남과 진작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음은 물론, 무수한 이들과 물자가 오가며 교역의 폭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부채감을 지우

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 당사자인 베트남측에서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베트남에서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욱 크게 키워왔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한국군 파병으로 빚어진 불행한 과거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그 사과 한 마디로 모든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할 수 있을까.

유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 한 마디 말로?

천만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 식민지배가 끝난 지 반백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진정한 사과, '유감' 이니 '통석의 념' 이니 하는 교언영색(巧言令色) 걸치레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사과 한 마디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도 모르는 채 대통령의 유감 표명 한 마디로 모든 과거를 덮어두자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역사는 냉혹한 것이다.

우리는 싫어도 지나간 베트남전을 돌이켜 봐야 한다. 나아가 엄연히 가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양민을 학살한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4. 3사태와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물론이고,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노근리사건의 예를 보더라도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노근리, 그것은 한마디로 광기와 반이성의 역사였다.

"미군들은 터널 속에 대피한 사람들을 향해 앞뒤쪽 야산에서 밤낮없이 기관총을 쏘아댔다. 터널 안 콘크리트 벽에서 연신 불꽃이 튀었다. 사람들이 계속 쓰러졌고, 터널 안은 비명과 울음소리와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영문도 모르는 채 죽어간 시체가 철로와 냇가, 그리고 터널 속에 즐비하게 널렸다."

그러나 "한국군이 한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날엔 줄초상이 났어.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가 죽였지. 여자들은 강간한 뒤에 그 자리에서 싸 죽이고..." ("한겨레 21" 273호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했다는 증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거짓말이라고?

자유의 십자군이었던 우리 한국군은 절대 그럴 리 없었다고?

빨갱이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솔직히 우리는 진실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늘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가해자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바로 그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용기 없이는 안된다. 미래는 지나간 역사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의 정직한 반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 끔찍한 전쟁에 참가했던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이었다. 그들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책임은 전적으로 참전을 결정한 세력이 져야 한다.

따지고보면 그들이야말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다.

그들은 도움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도 않은 남의 땅에 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도 스스로 정체성의 혼돈을 겪었다. 귀국 후에는 부상과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나아가 베트남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담론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쓸모없는 것이라 무시해버릴 순 없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며, 그들이 먼저 나서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역사의 한 대목을 무작정 덮어두자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무작정 부인할 때, 우리가 세월이라는 간편한 방책에 기대어 무작정 과거를 잊자고 말할 때, 그들의 희생은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희생으로 간주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전개된다면 그것은 분명 인간의 인간다움을 옹호하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불씨로 활활 타오를 것이다.

21세기가 다가온다.

그 백지 위에 어떤 날말을 써야 할까. 전쟁, 말살, 배반, 갈등, 모략, 음모, 은폐, 고문, 학살, 증오, 속도, 물질, 소외, 탐욕 ... 천만에! 아무도 그런 끔찍한 날말들로 21세기라는 백지가 또 다시 얼룩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역사라는 유전자 지도에 DNA처럼 박힌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는다. 바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용기만이 21세기를 황금빛 영토로 우리 앞에 내비춰줄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베트남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한국군 파병'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5천년 역사상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20세기는 그동안 쌓아온 인류의 문명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만드는 야만적인 일들로 이어졌다. 두차례에 걸친 전지구적 규모의 전쟁은 인류가 그토록 천착해온 과학기술이 인류를 절멸케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650만의 유대인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학살한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와 일본군대에 의한 남경대학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들게 했다. 또한 보스니아와 르완다에서 벌어진 참혹한 학살은 인간,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을 하게 만들었다. 인종과 종교에 대한 편견으로 비롯된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에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있었다. 이런 비극의 현장에 한국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두 얼굴로 등장한다. 바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그 배경이다. 노근리 주민들은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의 피해자였고, 그 진실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두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피해에 대해서도 가해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반공이데올로기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지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함과 통한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20세기가 저물어가고 있다. 비겁과 침묵 속에 한 세기가 이물고, 새천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 새로운 천년에 우리의 운명은 어떠할까. 지구상에서 전쟁의 긴장이가장 높은 곳에 사는 우리의 운명은 정직한 기억으로부터 비롯되리라. 20세기의 비극에 대해 말하지 않고 21세기의 희망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우리가 겪은 20세기의 비극에 대해 말해야 한다. 역사의 증인으로 그 날의 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우리가 겪은 야만의 시간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다가올 시간들은 희망이 된다.

2. 베트남전 개략

한발의 총성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은 그것을 일으키려는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그 시나리오를 실행한다.

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것은 1965년이지만, 사실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훨씬 이전부터이다. 베트남이 1954년 디엔비엔푸에서 프랑스군을 대파한 이후부터 미

국과의 전쟁은 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의 한 작은 국가가 식민모국을 대파한 디엔비엔 푸 전투는 프랑스의 식민지체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물리친 군사적인 대승리였으며, 베트남 민중의 저력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전투였다. 이러한 군사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제네바협정의 테이블에 앉아야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 제네바협정에 의해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된다. 2년 후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세우는 전제하에, 제네바 협정 후 미국은 남베트남에 친미반공정권인 고딘디엠 정권을 세우며 대리통치를 시작한다. 그리고 제네바 협정에서 규정했던 자유선거실시를 통한 통일정부수립을 반대한다. 선거를 치를 경우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베트남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도차이나 전체가 공산화가 된다는 것이 미국이 베트남에 친미반공정권을 세우고 지원한 논리였다. 이른바 도미노 논리다.

'도미노논리란 1947년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세계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한 트루먼 독트린에 담긴 내용 중에 핵심적 요소였다. 이 독트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시의 국무장관인 조지 마셜은 "그리스가 떨어져나가면 터키가 뒤따르고 그렇게 되면 소련의 지배권은 중동과 아시아 전체로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리에 근거하면 제 3세계의 어떤 지역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된다. 이 논리는 미국의 전후 세계지배에 대한 야망과 환상과 상호 작용하면서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현실화시켜나갔다.'

이 도미노이론은 세계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보여준다. 2차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산업을 부흥시키고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제 3세계의 모든 지역을 미국의 잠재적 개입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결국 선거는 무산되고 고딘디엠의 독재와 부패로 남베트남 민중들의 불만은 높아져간다. 1955년에서 1963년 기간에 남베트남 군사예산의 85퍼센트를 미국이 제공했으며,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을 합한 전체 사이공정권의 예산은 그 3분의 2가 미국이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친미정권을 통해 대리반혁명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큰 차질을 빚고 있었다. 내적 기반이 전적으로 부재한 고딘디엠 정권은 비밀경찰에 의한 폭압정치를 해야만 했고, 이는 농민들의 저항을 초래했다. 독재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조직망만 더 넓혀나가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고딘디엠정권은 붕괴되고, 몇번의 쿠데타를 거치면서 미국은 직접 개입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 신호탄이 통킹만 사건이다. 통킹만 사건이란 미국 해군함정 매독스호가 공해상에서 북베트남군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북베트남의 발포를 유도해내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당시 북베트남 영해에서는 사이공군대가 불법적인 활동을 벌이고 미군함정이 영해를 침범하면서 이를 지원하고 있었다. 즉 북베트남의 대응은 영해침공에 대한 정당한 방위행동이었다. 북베트남은 매독스호에 경고를 수차 발한 후에

공격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구나 매독스호에 대한 북베트남의 제 2차 공격이 있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아예 없었던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 3월 2일 북폭을 함으로써 미국은 본격적인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다.

군사적, 물리적으로 총공세를 퍼붓는 미국에 베트남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농민들의 민족주의적, 혁명적 연대로 맞섰다. 전쟁은 무력, 힘, 군사력, 과학, 기술 등 물질만능주의와 민족적 사회혁명, 민족해방, 민족독립심, 정신주의, 동양적인 토지소유와 관련된 농민들의 의식과의 대립구도를 띠며 온베트남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다. 2차대전 때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이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6백만톤보다 1.5배나 많은 약 9백만톤의 폭탄을 그 좁은 땅에 퍼붓기 시작했던 것이다.

1965년에 시작된 베트남 전쟁은 1968년에 정치적 전환점을 맞는다. 1968년 1월 31일의 구정대공세는 대부분의 농촌과 잠시지만 도시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장악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은 이에 경악한다. 당시 미국의 공식분석으로 남부베트남의 공산계릴라는 29만명 정도였다. 그러나 구정대공세는 그들의 수가 50만에서 60만 정도로 추산할만한 숫자였다. 이것은 미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다. 구정대공세는 공산계릴라가 남베트남의 농민 대중들과 맺고 있는 연대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국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에 대해 미국민들의 의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이 구정대공세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대단했다. 미국내에서의 반전시위가 본격화되었고, 유럽국가에서 학생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1968년 5월 혁명이 그것이다. 동구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소련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저항하는 '프라하의 봄'을 촉발시켰다.

당시 제 3세계의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는 베트남의 구정공세는 제 1세계 내부에 비판적 정신을 부활시킨 것이다.'

구정대공세 이후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승리를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화 하기로 전략을 세운다. 이제 미국은 권위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작전은 더욱 잔혹해지기 시작한다. 네이팜탄과 고엽제의 대량살포로 베트남의 모든 숲과 들판은 불타고, 마을에서는 체계적인 학살이 일어난다. 밀라이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중에 양민을 학살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1968년 3월 16일 아침, 손미지역의 작은 마을인 솜랑에 로켓헬기의 기관총으로 엄호사격을 받으며 군인들이 투입되었을 때 주민들의 저항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도망가는 주민들을 쫓고 집을 불태웠다. 이어 증파된 군인들도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였다. 여자들이 윤간당했고 잔악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 미군의 피해는 이 끔찍한 학

살에 혐오감을 느껴 빠져나오기 위해 스스로의 발등을 쏴아서 부상을 입은 한 흑인 병사가 전부였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살상과 파괴는 베트남 전쟁이 '인민의 전쟁'(people war)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 사회, 한 민족의 구성원 전체를 무장여부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적'으로 규정해 제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인민의 전쟁에서 제국주의 군대가 약소민족 인민을 대하는 방식이다. 베트남의 밀라이 마을에서 미군들의 눈에는 어린 아이들도 예비 베트남인으로, 그리고 노인들은 전(前)베트남인으로 다같이 제거해야 할 '빨갱이'로 간주되었던 셈이다.'

그들의 눈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사냥해야 할 한 마리 사슴이었고, 노란 '국'(gook)-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국' 즉, 오물, 때, 찌꺼기로 불렀다. 그런 이 '국'이란 말은 베트남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이 먼저 들었던 말이었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들은 한국사람들을 '국'이라 불렀다. 그들은 이 '국'들을 노근리에서 마구 쏘아죽였던 것이다.-이었을 따름이다. 미국은 오직 전쟁에 승리하는 것에만 집착했을 뿐, 한 번도 베트남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전 베트남의 영토를 초토화시키고, 베트남 사람들의 참혹한 시체의 들판위에 그들이 세우고자 한 자유와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전쟁에 한국군이 파견된다. 모든 나라가 부도덕하고 인류의 양심에 칼을 긁는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베트남전쟁에 한국 '국'들이 파병되는 것이다.

3.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1965년 북폭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25개국에 참전을 요청하였으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타일랜드, 영국, 한국 7개국만이 참전을 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은 대부분이 포병대와 공병대 등 실제 전투와는 관련이 없는 부대를 파견했다. 특히 영국은 거둬지는 미국의 요청에 단지 6명의 의장대를 파견하였을 뿐이다. 6명의 의장대, 이것은 대단한 상징이다. 혈맹으로 다져진 영미관계에 있어 이 전쟁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표방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한 이 전쟁에 한국은 32만의 전투병을 파병하였다. 공식적인 파병은 1965년에 이루어졌지만 베트남에 한국의 젊은 군인들을 파병하는 것은 이미 1961년부터 예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해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에게 케네디 정부는 4가지의 조건을 내건다. 첫째, 한일국교 정상화, 둘째, 일본경제권에 한국을 편입시킬 것(미국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본이 대

행할 수 있도록), 셋째,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할 것, 넷째, 형식상 최소한의 선거를 실시할 것(합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민정이양의 모양새를 갖출 것) 즉, 쿠데타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조만간 있을 전쟁터로 한국의 국민들을 내보내라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정권승인이었다. 독재정권은 이 때 이미 5천명(월남전 전사자)의 푸르른 젊은이들의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민중들의 목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목숨이 팔려가고 있었다. 삶과 죽음은 이미 독재정권의 손아귀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베트남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나라의 정세는 어떤지, 그들이 진실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베트남전의 특성인 게릴라전이 어떤 방식의 싸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전쟁의 잔혹함과 광기를 이해하기엔 너무나 눈부셨던 한국의 청년들이, 머나먼 남쪽(월남이란 말의 뜻)으로 가는 군함에 올랐다.

1) 참전국

오스트레일리아	200명-7천명 (린든 존슨의 압력)
뉴질랜드	30명-5백명
대만	30명
필리핀	17명-2천명 (마르코스)
타일랜드	1만 1천명
영국	6명(의장대)
한국	약 5만명의 전투병 상주

2) 한국군 참전

① 파병과정

- 1964년 5월 9일 미국정부, 대한민국에 베트남전 파병요청
- 1964년 7월 15일 베트남 정부, 공식적인 지원요청
- 1964년 7월 31일 대한민국 국회 제 44회 임시국회 개최, 베트남 참전 파병안 가결 통과
(반대표 1표:박종태(공화당-여당), 투표후 검표과정에서 기권 1표:서인석 공화당-여당)

② 참전기간	1964년 9월 22일-1973년 3월 23일(8년 8개월)
③ 참전인원	연 32만명
④ 전사자	4960명
⑤ 부상자	16,000명

⑥ 적살자 4만명

⑦ 벌어진 돈 10억달러

⑧ 한국군 총사령부 소재지-사이공

주베트남 한국군 야전사령부-나짱

* 1964년 9월 22일 비전투부대 (의료지원단과 태권도 교관단) 파견

* 1965년 10월 청룡 부대(해병 2여단) 맹호부대(수도사단) 파견

* 1966년 4월, 9월 맹호(26연대) 백마(9사단) 파견

-1170회의 대대급 이상 작전

55만 6천회의 소규모 단위작전

* 맹호부대 주둔지-송커우, 퀴닌, 푸캣

청룡부대 주둔지-푸라이, 호이안, 다낭

백마부대 주둔지-캄란, 난호아, 투이호아

* 규율 - 3훈 5계 (1970년 자료)

- 3훈 1. 우리는 적에게 용감하고 무서운 한국군이 되자

2. 우리는 월남인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할 타이한이 되자

3. 우리는 우방군에게 굳기엄정하고 신의있는 코리안이 되자

- 5계 1. 명령불복

2. 경계태만

3. 사육범행

4. 대민사고

5. 허위보고 (임동후, '붉은 아오자이' 중)

참조1) 미군참전 현황

* 참전기간 : 1961년- 1973년 3월 28일

* 참전인원 : 연 350만명

* 전사자 : 56,000명

참조2) 베트남군참전 현황

* 인구 (남베트남: 1880만 북베트남: 2270만, 총 4100만)

* 전쟁 중 사망 : 110만명(군인) 150만명(민간인) 총 260만명 사망

* 전쟁 중 부상 : 400만명

3) 월남전 전사 및 부상

	전사	부상
*미 군	56,000	200,000
월남군	200,000	500,000
월맹군	900,000	1,500,000
민간인	1,500,000	3,000,000
한국군	5,000	16,000

4) 한미간 교섭

참조1) 브라운 각서
-1966년 3월 4일 발표

(1) 군사원조

- ①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 지급
- ② 파월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 부담
- ③ 해외전투수당 지급
(국가별 전투 수당 지급 금액 비교표
중위 기준 : 미 국 \$485
필리핀 \$454
태 국 \$395
한 국 \$155)

(2) 경제지원

- ① 베트남 내 건설 사업 참여
- ② 수출 장려 및 기술원조 증가
- ③ 경제개발 차관 제공
- ④ 경부고속도로 건설지원
-종전 후 국내의 각 건설업체들은 베트남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 진출.

5) 참전군인들의 목소리

한국 대통령은 그가 이 민족을 위해 옳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월남으로

보냈다. 국제적인 체면이나, 어쩌면 한국전쟁 동안 우리들을 도와준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그까짓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들의 목숨을 바쳐 그 대가로 벌어들인 피물은 돈이 나라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밑거름 노릇을 했다. 적어도 그 상부 계층은 세계 시장으로 거보를 내디뎠다. 목숨을 팝니다. 용병의 민족!

안정효, '하얀 전쟁' 중

민심

진짜 베트남은 마을에서 웃고 있는데
높은 분들은 실정 모르고
위험한 산에 가서 잡아오라신다

지원군으로 왔던 지난 한해
부대와 부대를 잇는 도로를
낮에만 장악했을 뿐

예기치 못한 대민사고
무고한 양민들의 원성
민가수색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중요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
반 이상 민심이 우리를 떠나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한단 말인가

지휘지침

"백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명의 양민을 보호, 구조하라"

사령관님 지휘 지침
맹세코
우리는 양민을 학살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옆구리에는
큰 구멍이 생깁니다

전선이 형성되어
彼我가 분명하다면
어느 누가 양민을 건드릴까요

떡을 만지다 보면
고물도 더러 묻는 거지요
쌀에 쌀이 섞였으니 고르기 어렵습니다

임동후 시집, '붉은 아오자이' 중

6) 미국인의 목소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은 어떤 희생도, 존슨 대통령의 마음 속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까지도 희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미국의 사상자 통계를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가 있었다.'

'한국군은 미군보다 대우가 훨씬 나빴고, 심지어는 월남군에 대한 대우보다도 훨씬 나빴는데 그
덜만한 이유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적의 병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몇몇 정글로 위험한 임무를
떠고 보내졌지만 공군과 포병의 지원은 훨씬 덜 받는 실정이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군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바는 그들이 무자비한 군대라고 알려졌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는 그들은 포로의 취급에 있어서 제네바 협정의 예우
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제프 덴지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0 August, 1989, p.12.

'역사적으로 보자면 알려지지도 않았던 이 용병들은 사이공의 협조요청에 따라 우방 여러 나라
가 호응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참전하게 되었다는 구실을 뒷받침함으로써 공헌을 한
셈이다. 한국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면서 그들의 봉급을 벌었는데, 서울의 군사 독재 정권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숨겼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전쟁을 추진하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용병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의회로부터 비밀로 숨겼다.'

칼 샌버거, Los Angeles Times, 10, September, 1989, Book Review p. 2

'필자는 전쟁 중에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형식적으로만 주둔했던 빈약한 오스트레일리아 곡사
포대에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사상자까지 같이 내면서 싸웠던 우방으로서의 한국군의 활동을 보
도한 특파원은 당시에 없었다.'

허버트 미트갱, The New York Times 3 June, 1989, p. 16

4.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지역 답사보고

1) 린투안성

①판랑-린선사

* 1969년 10월 14일 한국군인들이 린선사에서 71살의 주지승, 69살의 노승, 41살의 여승, 15살의
행지승 4명 사살'

* 현장목격자 - 응웬 틴 유엔한(당시 15살)

"따이한 군인들이 먼저 스님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어서 달려달라며 달아나는
여자보살님에게도 총을 쏘았다. 그리고는 시체를 모두 불태웠다."

* 생존자 - 푸 스님

"화장을 하고도 스님들을 안식시켜드리지는 못했어요. 스님들을 모실 절이 사라졌
기 때문 이지요. 스님들의 뼈를 항아리에 고이 담아 모셔오다가 지난해에야 이 절
에 안치해드렸지요."

2) 빈민성

① 빈민성 타이선현 타이빈사 안빈촌 안칸마을

* 위령비

'1966년 2월 26일 미제국주의의 지휘 아래 남조선 괴뢰군인에 의해 무고한 양민 320명이 학살당하다' - 1992년 빈민박물관에서 세움

* 생존자-응호아 슈안 칸(69세)

"한국군은 7일동안 머물며 3번의 소탕작전을 했다. 손발이 잘려나간 시체들이 덩굴었다. 우리 마당에도 시체들이 있었다. 나는 도망을 가서 겨우 살았다.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② 프억츄사

* 위령비

'1965년 12월 22일 이곳에서 한국군에 의해 사람이 죽다'

* 생존자-땀공땀(45세)

"남조선 군인들의 학살이 자행될 당시, 땅굴에는 할머니와 두 명의 친동생 등 내 가족 4명을 포함, 모두 11명이 있었다. 그 중 8명이 죽고, 나와 두명의 친동생만이 살아남았다. 나의 할머니도 그때 돌아가셨다. 문화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몇몇 기자들이 마을로 찾아와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당시 학살이 마을이 아닌 벌판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통신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이라도 기념비에 새겨주기를 바란다."

③ 폭홍

* 위령비

'1966년 3월 23일 140명의 민간인이 미국과 한국군에 의해 죽다.'

* 생존자-썩썩 칸(72세)

"내가 학살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었다. 아버지는 땅굴로 피신해 있었고 나 또한 땅굴로 떠밀려들어갔는데, 마침 내가 들어간 땅굴은 이미 사람들이 죽어있는 땅굴이었기 때문에 한국군들이 더 이상 수류탄을 던지지는 않았다. 내가 들어갔던 땅굴에는 모두 22명이 있었는데, 내가 그 땅굴의 유일한 생존자이다. 마을 주민들에 의해 땅굴에서 들어올려졌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있

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내가 깨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다. 그 후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버리고 이주했다. 그 학살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내 가족의 경우에는 모두 4명이 살해되었고, 나 혼자만이 살아났을 뿐이다."

3) 꾸앙응아이성

① 커우안폭

* 위령비

* 생존자-응웬 응 옥(1954년생)

"나의 어머니도 한국군에 의해 학살당했다. 내 가족 중에 모두 4명이 살해당했다. 1966년 12월 6일 한국군들은 이곳에서 131명의 주민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다. 한국군들은 이 마을에 주둔하였고, 자주 총을 쏘아대며 주민들을 위협했다. 그 당시 이곳은 논이었으며, 나는 겨우 12살에 불과했다. 계속해서 총성이 울리자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약 1시경에 어머니, 누나, 두 명의 조카 등 우리 가족 4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집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한국군들은 주민들의 집을 찾아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한국군들이 총을 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한국군들은 많은 사람들을 한 집에 모아놓고 집단학살하였다. 12월 6일 당일날 희생자들을 모두 땅에 묻었다."

* 생존자-응웬 티 멘

"한국군이 학살을 자행할 당시 나는 부상을 당했다.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어머니의 배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어머니는 진창에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머니를 들어올리자 그 밑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한다. 그당시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그 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1966년 10월 25일의 일이었다. 우리 마을에는 고엽제에 중독되어 3년 전부터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여인도 있다."

② 꾸앙응아이성 빈선현 빈호아사

* 위령비

* 생존자-팜반국(67세)

전(前)빈호아사 당서기장, 인민위원회 주석, 현 빈호아사 퇴역군인회 집행위원

“한국군이 이곳에 쳐들어왔을 때, 일부 주민들만이 집에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논에 일을 하러 갔었다. 한국군들은 주민들을 여러 그룹으로 모아놓고 총을 닦았으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되어서야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전하기를, 한국군들이 총을 쏘자, 어떤 사람들은 위로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쓰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목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오후 6시, 일을 나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죽은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하였다. 어떤 집의 경우엔 20여명의 가족이 몰살을 당하기도 하였고, 진창구덩이 속에는 몇 명 아이들이 사람들의 밑에 깔려 여전히 살아있기도 했다. 어머니의 젖을 찾아 기어다니던 아이들은 모두 죽었고, 사람들의 밑에 가려 숨죽여있던 7명의 아이들은 살아났다. 그 아이들 중의 한 명인 응폭은 현재 현의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베트남과 미국-한국간의 교전이 이루어지면, 공중에는 미군 전투기가, 지상에서는 한국군들이 공격을 해왔고, 외곽에서 미군들이 폭격을 가하면, 한국군들은 마을로 들어와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폭탄과 수류탄을 터뜨렸다. 이 지역에서 모두 549명이 학살을 당하였으며, 그 중에는 어른과 아이가 모두 한데 엉겨 쓰러져 있었다. 한국군이 들어와 마을을 소탕하였을 때 그들은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어 안심을 시킨 뒤에 총을 쏘았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노인과 어린이였으며, 청년들은 이미 도망을 친 상태였다. 단지 한국군이 공격을 하리라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만 어처구니없이 죽어갔다. 대체적으로 많은 양민 학살이 이루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5-7명, 또 어떤 지역에서는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학살되었다. 이 학살사건은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해방 이후 국가에 이 지역을 전적으로 공인해달라는 진정서를 올렸으나, 5,6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1994년 영국인 여성 한 명이 이 지역을 조사하러 왔을 때 나는 모든 자료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영국인 여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996년 다시 베트남에 돌아와 이 학살 사건의 희생자 430명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겠다고 정부에 보고하였다. 영국은 이를 옹호, 4억동을 지원하였고, 꾸앙응아이성에서 2억동을 지원하여 모두 6억동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그 부인은 위령비 건립을 위해 다시 베트남을 방문하였다. 그는 또한 영국에 돌아가 빈호아사에 병원이나 학교건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방문해준데 대해 우리

빈호아 주민들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국민들과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이 학살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1967년 10월, 한국군들이 철수하였을 당시 이 지역의 총희생자는 553명이었으며 842채의 가옥이 불태워지고, 428마리의 물소, 423마리의 돼지가 불태워지거나 살해되는 등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팜반콕씨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노트가 있다. 이 노트를 보며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했다.)

③ 폭죽

* 위령비

‘1966년 10월 9일 한국군에 의해 112명의 무고한 양민이 죽다.’

* 생존자 팜티메오 (85세)

“1966년 10월 9일, 한국군들은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놓고는, 오후 5시경 되돌아와서 주민들을 모두 엮드리게 했다. 그후 수류탄을 던져 주민들을 죽였다. 그때 내 등위에 있던 며느리와 손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어언씨와 그 딸은 부상을 당하였다. 나도 부상을 당하였는데, 지금도 팔에 당시의 흉터가 남아있다. 학살이 끝나고 어언씨가 자신의 딸에게 물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논으로 가 물을 떠오니, 이미 두 사람은 죽어있었다. 나에게는 모두 1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과 1명의 며느리를 전쟁통에 잃었다. 현재는 3명의 자식만이 남았다.”

④ 폭번

* 위령비

* 생존자- 레티티엣

“한국군이 마을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땅굴로 밀어넣을 때, 나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한국군이 다가와 우리 모자를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우리를 놓아달라고 싹싹 빌었다. 한국군의 명령에 따라 나는 이제 겨우 기어다닐 줄 밖에 모르는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으나, 얼른 다시 안고는 또 빌었다. 한국군들은 아이를 땅굴 속으로 밀어넣고는 가버렸다. 나도 아이를 따라 땅굴 속으로 내려갔다. 지금도 한국군에 의해 땅굴에 던져졌던 아이는 항상 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⑤ 쫓칸

* 위령비

'1969년 4월 17일 한국, 호주, 미국에 의해 47명이 죽다.'

* 생존자-띠우엔

"1969년 4월 17일, 한국군의 양민학살 사건으로 47명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 나는 겨우 7,8살에 불과했으며 다른 아이 한 명과 도망을 치다가 땅굴 속으로 떨어졌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땅굴에는 덮개가 있었다. 한국군이 지날 때 우리는 땅굴의 덮개를 닫고 숨어있다가 한국군이 떠나고서야 덮개를 열고 땅굴에서 나와 부모를 찾으러 다녔다. 꼬박 이틀이 걸려서야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4) 쿠앙남성

① 디엔반현 투이보촌

* 위령비

* 생존자-응웬티니 (83세)

"한국군의 학살은 새벽 1시경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곳의 주민들 전체를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아죽였다. 모두 105명이 죽었다. 그 중에 내 자식들도 세명이 있었다. 학살 당시 나도 입에 파편을 맞아 지금 이렇게 입이 돌아갔다. 나에게는 모두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전쟁통에 모두 잃었다. 현재는 외가쪽으로 한 명의 조카가 남았을 뿐. 그러나 이 조카도 아주 멀리 살고 있다. 그래서 혼자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 3년전부터 매 달 정부로부터 6만동(우리나라 돈으로 6천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할머니는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고 증언했는데, 마을 입구의 위령탑에는 미군에 의해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한국군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다.)

② 디엔퐁 마을

* 위령비

* 생존자-레콩

"이곳에서 미군은 145명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었다. 그 당시의 원한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 후 1968년 1월 8일, 또다시 36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작은 어머니를 비롯한 5명의 내 친척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을 당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을 '쏘

이더우' (녹두콩을 섞어 지은 찰밥)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낮에는 정부군이 통제하고 밤에는 베트남군이 지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한국군이 물러난 뒤에 단 한 명의 한국인도 여기에 다녀간 적이 없다. 단지 베트남 기자들만이 다녀갔을 뿐이다. 전쟁 당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가 전쟁 후에 되돌아왔다."

5.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

'나와 우리'가 베트남의 마을들, 특히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고 주장되어 지는 마을들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분류되었다.

1) 첫 번째는 정부의 관리나 영어통역을 맡았던 사람들의 견해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과거를 접자. 그리고 미래를 보자"라는 것이었다.

퀴년에서 만났던 영어통역 민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 잊었죠. 한국 군인들이 했던 일을 우리는 다 잊었어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과거를 접고 미래를 보자는 것이죠."

1966년 3월 19일과 20일 중앙위원회가 응이아빈성 타이선현에서 조직한 '중부 각 성에서의 전쟁범죄 조사회의'에서 사례발표를 했던 응웬 탄 풍씨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과거를 접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 역시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이 알고싶다고 하니 얘기를 하지요."

2) 두 번째의 반응은 이러한 사건들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목소리였다. 프억형 사의 땀땀의 이야기다.

"문화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몇몇 기자들이 마을로 찾아와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당시 학살이 마을이 아닌 별판에서 자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통신부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이라도 기념비에 새겨주기를 바란다."

즉, 베트남 정부에서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자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들은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도 아니고, 조국을 위해 한몸을 기꺼이 바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민간인의 죽음은 실제 전투병들보다 많다. 특히

여자들은 강간당하거나 윤간당한채 죽는다. 전쟁의 중심세력은 남자다. 전쟁터로 떠나거나 숨어버린 남자들을 대신해 빈 마을과 아이들을 지키며 여자들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태의 게임에서 또한 가장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다.

빈호아사의 롱빈마을에 사는 팜반꼭씨도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국민들과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이 학살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방문해준데 대해 우리 빈호아 주민들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인민위원회에서 일을 하거나 했거나 한 사람들이다.

3) 안쪽 마을의 한 농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노트에 적어주었다.

"1966년 10월 25일 남조선 군대에 의해 학살당한 사람들은 선량한 양민이다. 현재 살아남은 우리는 마음에 복수심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학살당한 가족들을 도와주길 제안한다."

이러한 말들은 베트남과 우리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6. 베트남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몇가지 이유

1)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1966년 3월 19일과 20일 북베트남 중앙위원회가 응이아빈성 타이선현에서 조직한 '중부 각 성에서의 전쟁범죄 조사회의'에서 사례발표를 했던, 그리고 후에 타이선현 주석을 지냈던 응웬 탄 풍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병사들이 빈안사에 몰려와 학살을 자행하였을 때, 당시 그곳에는 북베트남군이 없었다. 단지 주민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내 생각에 만약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양측이 교전 중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건 새삼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학살의 대상이 무고한 양민이었다는 데 있다."

전쟁 중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집단학살 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나와 우리'가 답사한 지역에서 한국군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고 말해지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었다. 젊은 남자들은 이미 남베트남군 혹은 북베트남군이 되어 집을 떠난 상태였다. 설혹

남아있다 하더라도 군화발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가장 멀리, 가장 깊숙히 도망을 쳤다. 마을에 남아있던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져온 여자와 어린이가 대부분이었다. 전쟁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바로 이들이다. 바라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못한 전쟁의 참혹한 피해자들인 이들은 들이대는 무기 앞에서 저항도 못하고 죽어갔다. 그들은 '파이한' 군인들이 와서 수많은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 방어할 무기도 없는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수치를 들어 증명했다. 증인은 구체적이었고, 증거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들은 기다렸을 것이다. 이 통한의 죽음을 증거할 날을. 영웅적인 죽음도, 구국의 산화도 아니었던, 이 참혹한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기다렸을 것이다. 전쟁 중의 양민학살은 우연과 광기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작전의 일부가 된다. 참혹한 주검이 쌓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도 증폭될 것이다. 한국군이 양민학살을 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예는 베트콩이라 불리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의해 아군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이었다.

'노암 촘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군은 단순히 화가 나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군이 무고한 양민들을 인질로 삼아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군 중에 베트콩의 저격을 당하거나 지뢰로 희생자가 생기면, 그 주변의 베트남 양민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베트콩이 감히 한국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면 베트콩이 무서워한 것은 한국군의 용맹성이 아니라 무고한 양민을 인질로 삼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안전을 구하는 무서운 비겁성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역시 마찬가지다. 밀라이의 경우도 미국이 이미 전쟁을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한 그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대량학살이 많아질수록 협상은 빨라질 것이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베트콩이 숨쉴 공간과 인적, 물적 공급원을 차단하고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CIA가 주도한 피닉스작전과 미 군부의 '수색파괴작전'을 포함한 이른바 '평정' 작전을 전개했다.

이렇게 양민학살은 체계적인 전략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양민학살은 전쟁범죄가 된다.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전쟁범죄자는 더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인간성을 파괴했다. 그러나 침묵 뿐이었다.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무도 베트남 민중들의 억울했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비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체계적인 침묵이, 그리고 금수조치가 또한번 이들의 삶을 짓밟았다. 침묵은 이들에게 또한번 죄를 짓는 것이며 모든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다. 이제 한국정부는 입을 열어야 한다. 한국의 군인들에 의해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살아남은 사람에게도 죽은 사람들에게도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죽은 자의 고통이 해원되지 않고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 역시 고통이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군은 한 마을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집단학살했는지, 이제 그 진실을 말해야 한다. 30년 전 베트남의 작은 마을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국가폭력에 대응해야 한다

베트남의 비극은 베트남에서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간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벌어들인 돈은 독재정권의 토대가 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20년 장기집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3선개헌과 유신헌법을 통한 폭압정치의 물적 토대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총아였던 전두환은 80년 쿠데타를 일으켜 이번엔 광주민중들의 피를 기반으로 다시 정권을 잡았다. 우리가 우리 정부를 바로 세울 수 없을 때, 독재정권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운다. 늦었지만 베트남전을 다시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60년대에 20대를 보낸 젊은이들은 그 먼 열대의 나라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다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만큼 덜 차출되었다. 한국의 군인들이 위험한 정글 속으로 더 많이 들어갈수록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미군들은 더 안전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남의 나라 국민을 대신해 자기 나라의 국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몬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박정희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그를 신화화하는 집단과 세력이 있다. 게다가 현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국민들의 목숨은 늘 위태롭다. 광주의 비극 뿐 아니라 씨랜드 사건이나 인천의 호프집 참사 역시 국가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베트남 참전 군인들 또한 물어보아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팔아 부자가 된 정권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켰다. 시체는 보지 말고 그 위에 쌓아올린 금자탑만을 보라했다. 그러나 참전했던 병사들에게 베트남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자유와 정의를 구하러 갔던 병사들의 몸은 고엽제에 중독되어 마비되어갔고 전쟁의 후유증은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전쟁의 광포함과 잔혹함을 견디고 온 병사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간신히 죽음의 모서리를 피해 돌아온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람을 죽인 죄의식과 악몽, 날이 갈수록 선연해지는 전쟁의 기억이었을 것이다. 전쟁

은 이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깊고 큰 상처를 남겼고, 한 개인의 인생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렸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만든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지 않았다. 어스름이 되면 옥상에 올라가 돌맹이를 쌓아놓고 수류탄이라며 바닥으로 던지고 앞드리며 평생을 사는 한 참전병사를 보며 이제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 누가 그들을 그곳으로 보냈는가,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먼 이국땅에서 죽음과 공포의 시간을 견디어야 했던 참전군인들, 이제 그들 또한 물어보아야 한다. 누가 그들을 그 멀고 먼 정글로 보냈는지, 누가 그들의 총구의 방향을 결정했는지.

4) 지식인의 변명과 침묵은 역사를 왜곡한다

전쟁 중인 1966년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베트남에서 전쟁범죄에 관한 국제재판소'를 조직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1967년 2월 이 재판소가 개최한 스톡홀름회의에서부터 집행의장으로 참여했다. 이 재판의 재판관에는 아이작 도이처같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재판에서 사르트르를 비롯한 대표자들은 베트남에서 미국의 행위가 민간인들에 대한 광범한 무차별 대량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라는 전쟁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미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허명을 내세우며 베트남인민에 대한 제노사이드라는 의도적인 무차별살상, 즉 전쟁범죄를 범했다고 이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넘는 동안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전투병을 파병한 이 나라에서는 베트남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고 나오려 했던 몇사람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국가보안법은 늘 목을 조였고, 반공이데올로기는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댔다. 베트남전쟁이 한국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땅의 지식인들은 말하지 않았다. 지식인들의 침묵 속에 베트남은 몸에 박힌 가시가 되어 서서히 썩어갔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풍문으로 떠돌았지만 아무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고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인류적 양심으로 역사를 객관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나오기엔 이 땅의 지식인의 지반이 너무나 약했을까. 잘못된 한국현대사의 뿌리인 베트남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 지식인들의 책임회피임에 틀림없다. 베트남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를 직시할 수 있고, 광주민중항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베트남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반전평화운동으로

베트남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대

한 전략을 지금처럼 느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전쟁론'이란 책이 서점가를 강타하고 있다.

1964년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 소련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1956년 시작된 중소분쟁은 1959년 특히 심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소련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1960년에 들어서서 흐르시초프가 동서평화공존정책을 표방하면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베트남공산당은 친중국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1962년이 되자 중국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대해서 무장투쟁보다는 협상할 것을 권유했다. 뿐만 아니라 1963년 12월, 북베트남공산당이 만일 미국이 전쟁을 확대할 경우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은 베트남전쟁에 직접 군사개입하여 베트남공산당을 도울 생각이 없다는 뜻을 계속해서 미국측에 암시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통킹만 사건은 일어난다. 전쟁은 준비되고 계획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자국의 이익이 걸린 나라들의 관계를 읽어내고 대응하지 않으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누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지, 누가 한반도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숨어있는 코드까지 읽어내야만 한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있다. 단지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 한국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 반전 평화의 담론을 뿌리내리게 하는 길이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파괴당하고 학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외국군대가 들어올 경우 무차별적인 양민학살은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은 인류의 전쟁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베트남 논의의 궁극은 반전 평화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해결의 결과못지 않게 그 과정은 중요하다. 베트남전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인권 교육이 되며, 인권에 관한 새로운 법제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성찰 없는 역사는 왜곡된 기억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친일파에 대한 숙청없이 시작된 공화국의 한계는 결국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란 문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진정한 성찰을 통해 그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면, 다시는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열대의 땅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베트남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다시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때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민주주의의 구현이고, 통일로 가는 참된 길이 될 것이다.

베트남전의 성격 및 배경

기본적으로 베트남전은 외세에 대한 베트남의 독립전쟁이었고, 사회주의는 독립을 위한 투쟁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에 개입했다는 당시 미국측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주의는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론이었다.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데, 이데올로기를 들먹이며 이를 막고 전쟁에 개입할 권리가 미국엔 없었다." "

마치 일제에 저항하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이들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은 미국이나 그 추종세력에 의하여 자유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되어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비난받게 된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동남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은 베트남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지금 러시아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베트남인들이 조종하고 있는 괴뢰정권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 "

사회주의로부터 동남아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미국은 참전을 결정하고(훨씬 이전부터 인도차이나에 개입하고 있었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참전을 요구한다. 또 베트남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고 이의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해 나토와 같은 성격의 '동남아 조약기구'를 만들기에 이른다.

통킹만을 드나든 미국 구축함들은 모두 고성능의 전자장치를 갖추고 북베트남과 중공 남부의 레이

주

1) 북베트남 출신으로 65년부터 10년간 남베트남에 파견돼 베트남 독립전쟁에 참가한 당원으로 전쟁상황을 그림으로 그려 국민에게 알리는 선전요원으로 활동했고, 장교로서 직접 전투에도 참가한적이 있는 레람(68)씨의 동아일보 인터뷰 중에서, 1999년 9월 22일

2) 덴 케일 상원의원의 발언, 1983년 5월 25일/ 미국 외교기념과 베트남전쟁, 이삼성, 1991 법문사,

더 탐지 및 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간첩선이었다. 통킹만 사건에 앞서 상당한 기간 동안 남베트남 해군의 합동작전(34알파)로 북베트남의 흥메, 흥계 두 섬을 공격했고, 또 남칸, 논데 두 군사기지에 대한 폭격도 있었다. 따라서 8월 2일(즉 2일후), 미국 구축함대의 통킹만 접근이 북베트남 본토에 대한 대규모 공격작전이거나 상륙작전의 일부라는 판단은 북베트남군 사령부에 내리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³⁾

그런데 실제로 어뢰정의 공격이 있었느냐 하는 것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증거들이 미국 의회에 제시되기도 했다. 북베트남 해군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는 매독스호 선장 오지에 증명은 후일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뢰 공격의 보고를 21회 받았다. 그 첫 2회는 정확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9회의 보고는, 함체에 부딪쳐 되돌아온 스쿠류의 소리를 캐치하여 이것을 적의 공격으로 오판했을 가능성도 있다.”(1968년 3월 12일자 「에스콰이어」지 회견기사)

이 사건이 있는 뒤 5일, 미국 정부는 2차 회전이 통킹만에서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해전(태소트 작전)사령관인 해드릭 선장이 이 회전이 끝났다는 직후인 5일 0시반, 하와이의 통합사령부에 타전한 보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적과의 접촉이나 적으로부터의 어뢰발사 등에 관해서 많은 보고를 받았으나 재검토한 결과 의심스럽다. 기상이 번덕스러웠고 음파탐지기(소오너)담당병의 흥분으로 혼란이 일어난 듯하다. 매독스호는 적 어뢰정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와같은 명령(공격)을 하달하기에 앞서 완전한 사태파악과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⁴⁾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명분의 허구를 간파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참전을 거부하였고(유럽 국가 중에서는 2차대전 당시 미국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영국만이 형식적으로 의장대 6명만을 파병한다.), 경제원조 미끼 및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아시아의 몇몇 가난한 나라들과 베트남의 공산화가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던 인근의 몇몇 나라들만이 참전하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대만 / 필리핀 / 타일랜드 / 영국 / 한국)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을 비롯한 8개국만으로 연합군을 구성하여 베트남전을 수행하게 되나, 실질적인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마지못해 공병 및

의무병등의 비전투요원만을 파견하였다.

'게릴라전'이라는 베트남 전쟁의 특성상 민간인과 베트콩이라고 불리웠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구별이 힘들어지자 한국군과 미군은 민간인과 적군을 가리지않고 무차별 학살을 시작한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전시에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힘들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군인들의 항변이 전혀 타당성이 없지는 않지만, '적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힘들 때는 우선적으로 민간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한국은 66년도에 가입)의 정신에 위반되는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제 13 조

제 2장의 규정은 특히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충돌 당사국의 주민 전체에 적용되며 또 전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통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6 조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는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사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각 충돌 당사국은 사망자 및 부상자를 수색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24 조

충돌 당사국은 전쟁의 결과로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이산된, 15세미만의 아동이 유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의 부양, 종교생활 및 교육이 용이하게 보장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들의 교육은 가능한 한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자들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한 제 원칙이 준수되리라는 적당한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의 동의를 얻어(만일 그러한 이익 보호국이 있는 경우),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전시 아동들의 중립 국내 수용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또한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명찰의 패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의 신원을 식별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7 조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제 권리, 신앙 및 종교상의

주

3) 태평양 통합사령부 사프 제독의 보고-(국방부 비밀문서), 1964년 8월 3일

4) 베트남 전쟁 p.67, 이영희, 1994, 두레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및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 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보호자를 그 권력 하에 두고 있는 충돌 당사국은 건강상태, 연령, 종교 또는 성별에 관한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특히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르는 불리한 차별을 둠이 없이 모든 피보호자들을 동일한 고려 하에 대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충돌 당사국은 피보호자에 관하여 전쟁의 결과로 필요케 될 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3 조

피보호자는 그 자신이 행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단체별 및 모든 협박 또는 공갈에 의한 조치는 금지된다.

약탈은 금지된다.

피보호자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⁵⁾

하지만 이들 군인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인이 거의 확실한 사람들이나 전투 수행 능력이 없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인들까지 무차별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인류의 양심에 그어진 상처' 라는 비난을 받게된다.

이러한 학살이 세상에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가 잘 알려진 미군에 의한 밀라이 학살로 여기서는 밀라이 학살을 중심으로 참전국들의 학살 및 전후처리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밀라이 학살의 전개

"미국의 악마들이 나타난다."

미 제국주의가 베트남을 침략하였지만, 그들은 자칭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친구라고 하였다. 남베트남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침략야욕을 감추려고 하였다. 그들은 병사들에게 베트



남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의 심리조작은 그 내용이 '베트남의 여성과 전통문화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었다.

미군들이 베트남에 막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점잖은 신사'로 보이고, 공정과 정직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그들이 뭔가를 부숴서 때 그들은 이것을 돈으로 보상하였다. 그리고 약간의 지위를 사람들에게 할애하였고, 의사들을 여러 곳으로 파견하여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 미국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키스하고 그들에게 사탕을 주었다. - 적십자와 함께 베트남 사람들에게 팔을 벌려 의료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위에서 이러한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하였다.

이러한 민중선동은 일군의 남베트남 공화국군들이 미국은 좋은 친구라는 것을 믿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훌륭한 부자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비록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도 끝이 있는 법이지만, 하나의 연기밖에 할 수 없었던 그들은 곧 그 서투름을 드러냈다. - 그리고 그들은 악역을 연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그들의 민중선동은 '가면'을 벗게 된 것이다.

매년 미국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들의 역할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지만, 매년 그들은 우리의 인민들로부터 혹독한 공격을 받았다. 그 피해는 그들이 쉽게 가면을 벗도록 만들었다. 이제 미군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고, 모든 침략군이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모든 나쁜 욕구들을 보여주었다.

박멸작전에서, 그들은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는 등 그들 문명의 동물적 욕구를 보여 주었다.

최근 봄의 패배 때문에 그들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더욱 몸부림쳐서, 더욱 비인간적인 짓들을 하였다. 그들은 해나 사이공, 그리고 벤트레 같은 도시들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해에서 90%의 도시가 파괴된 것을 확인하였다. 수만의 우리 국민들이 죽거나 집을 잃었다. 서구 제국의 언론들도 우리의 피해가 미군의 폭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

5)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중,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계되는 일부 조항들. 별첨 참조

미국의 늑대들은 그들의 양의 외모를 잃어 버렸다. 그들은 입을 벌려 동물과 같은 잔인함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를 마셨다.

우리의 국민들에게는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는 것 이외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

그들의 표적으로서의 괴뢰군(남베트남군)의 위치는 명확하다. 누구든 의심스러운 사람은 케산 지역의 39유격대대를 보라. 그들은 미국 해병대의 앞에 놓여있는 방어막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당신은 이미 이 부대들이 해방전선의 병사들처럼 '조국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닌 거기에 있는 6,000명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 부대로 제공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문명이고 이것이 당신들이 그들-당신들의 형제를 죽인, 베트남의 피를 우리 몸의 피처럼 흘러내리게 만든-을 보듯이 연합군이라는 친구의 좋은 점인가?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의 복수를 위하여 그들의 머리를 쏘고, 우리나라의 모욕을 씻고,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바로 미군들의 총을 사용하라.⁶⁾

버란도 심슨은 현관 앞에서 그을려 죽어있는 한 할머니와 어린아이를 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도망가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남자를 따라서 두 사람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거기서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돌아와서 그만두라고 사정하겠는가? 나는 누구든 도망가는 자는 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들은 약 20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어린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내 M16소총을 사용했다. 나는 다가가서 여자와 어린이라고 통보하였다. 뒤에서 부터… 말하기 참 힘들었다. 남자? 그는 이미 도망가 버렸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나를 처벌할 수 없었다. 한 장교가 와서 우리는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책감을 느끼지만 -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고, 그것을 이행하여도 벌(양심의 가책이라는 - 필자 주)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결정할 수는 없었다."

심슨의 할머니는 이 사진을 보고 급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였다.⁷⁾

기록사진 등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로 인하여 밀라이는 미군에 의한 베트남에서의 대표적

주

6) "미국의 협체를 갖도록 만들자"라는 제목의 리플렛과 함께 제공된 보도자료 중, 1970년 1월 1일

7) '밀라이의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에서 한 참전자의 증언
(<http://www.pathfinder.com/photo/eassy/mylai/mylai07.htm>)

민간인 학살사례로 알려져 있으나,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학살의 증언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밀라이의 사후처리

참전자 중 한 흑인 병사가 도저히 그 학살에 동참할 수 없어서 자신의 발을 소총으로 썩버릴 정도로 잔혹했던 밀라이 학살은, 학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헬기 조종사로 학살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한 공군 조종사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세이무어 허시(당시 프리랜서 기자)등의 헌신적 노력 등에 힘입어 결국은 그 책임자들이 법정에서 서게 된다.

하지만 이 재판은 최하급 책임자 한사람만이 구속이 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 다음해에 곧바로 석방되어버려 몸통은 그대로 두고 꼬리도 아닌 깃털만 건드리고 만 재판이 되어버렸다. 극히 형식적인 재판이었지만, 그나마 밀라이 학살을 법정에서 정식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는데 그 나름대로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68년도에는 당시 공군 헬기 조종사였던 톰슨 준위가 헬기로 베트남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더 이상의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공로로 훈장을 받음으로써 미국에서는 내부적인 전후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다.

(미군) 베트남 학살 막은 군인에게 훈장 수여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행위로 기억되는 것이 '밀라이 학살사건'이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3월 16일, 윌리엄 켈리 소위가 지휘하는 미군은 대부분이 부녀자인 밀라이 마을의 양민 수백명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당시 밀라이 작전에 동원된 헬리콥터 조종사 휴 톰슨 준위와 두명의 조수 로렌스 콜번, 글렌 앤드레 오타(3주뒤 전투에서 사망)는 작전 현장에 도착한 뒤 그들이 목격한 현장을 믿을 수가 없었다. 길가의 도랑에는 학살당한 부녀자들의 주검이 즐지어 있었다.

켈리 소위가 이끈 부대는 베트콩 대신 마을 부녀자들을 마구 학살했던 것이다. 톰슨 준위와 두 명의 병사는 웅덩이에 몸을 감추고 있던 10명의 밀라이 마을 부녀자들을 발견했다. 톰슨 준위는 다른 헬리콥터를 불러 이들을 안전지대로 후송시켰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체무더기를 뒤지다 숨지지 않은 어린아이를 발견하여 그를 태우고 급히 후송했다. 톰슨 준위는 즉시 그의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양민 학살은 이 순간부터 중단됐다.

미군은 그뒤 1년동안 이 사실을 감췄다. 그러다가 세이무어 허쉬 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

다. 밀라이 학살사건 진상이 세상에 알려진 뒤에도 톰슨 준위 일행의 행적에 대해 미군 공식 기록은 지금까지도 '미군'이 아니라 '베트콩으로부터 밀라이 양민을 보호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기록은 30년만에 지워지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6일 톰슨 준위 등 세명에게 명예 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더 이상의 양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생존해 있는 두 명에게 훈장을 수여한 마이클 액커만 소장은 '밀라이 학살사건'을 일컬어 "미 육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톰슨 준위 일행은 모든 군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미 육군은 모든 장교 후보생에게 '밀라이 학살' 사건을 반드시 공부하고 또한 톰슨 준위의 인터뷰가 포함된 비디오테이프를 보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정연주 특파원⁸⁾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 적이 없다.

기타사례

호주는 7,000 여명의 포병과 공병을 파견하였으나 후방지원에 머물러 해방전선과의 실질적인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민간인 거주지역에 무차별 포격을 가함으로써 민간인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의 보상운동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타의 참전국들은 공병 및 의무병 등 상징적 차원의 군사력만을 파병하였기에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 구절을 읽고 난 후, 베트남 전쟁에 관한 캐나다의 관여를 당신의 눈으로 보십시오.

캐나다의 장교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정책의 공식적인 조력자이자 군 정보의 제공자, 그리고 국제적 규제를 위임받은자로서 미국과 협의하여 하노이에 최후통첩을 전달하였다.

캐나다는 약 3억달러에 달하는 무기와 탄약을 매년 판매하였고 밝혀지지 않은 양의 군사 물품들이 베트남에서 사용되었다. 캐나다의 군사력은 거의 넘쳐나고 있었다.⁹⁾

주

8) 한겨레신문 [해외] 1998. 3. 8. 日

9) 'The Book Snow Job' 이란 책에서 발췌, 찰스 테일러 - 베트남 저널리스트

직접 전투병을 파견하지 않았던 캐나다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얻은 자국의 이익을 비판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이 전쟁이 얼마나 부도덕한 전쟁이었나를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그대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350만을 파견한 미국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인 32만명만을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간인 학살 규모는 한국군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지 5년동안(1965년부터 69년)만 따진다 하더라도, 남조선 군대는 총 6백45건의 대대급 대량학살 작전과 3십6만2천18건의 중대급 이하의 작전을 조직하였다. 매번의 작전시마다 박정희 도당은 우리 동포를 가혹하게 학살하였다. 시체는 언덕을 이루었고 야만적인 학살의 원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옥은 철저히 파괴되어, 어떤 집은 불태워졌고 어떤 집은 무너져 내렸다. 초목과 농작물들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가축은 총탄에 맞아 숨지고 재산은 약탈당하였다. …… 아직은 불충분한 예비자료에 의하면, 남부 베트남에서 미국의 용병으로 활동하던 기간동안, 박정희 군대는 5천명의 우리 동포를 죽였고, 그밖의 1백 70명을 상해하였다.¹⁰⁾

비록 정부간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내적으로는 이미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물론 실질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지만)과 포상이 이루어진 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도 하루속히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진상규명의 노력을 통하여, 잔혹행위를 거리낌없이 행하도록 인간성을 말살하는 전쟁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평화의 분위기를 증진시켜 남북의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한국을 책임감 있는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켜서 국제적 인권 신장과 인류 평화에도 기여를 하게 할 것이다.

주

10)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이라는 제목의 베트남 정부자료 중.

제 13 조

제 2장의 규정은 특히 인종,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충돌 당사국의 주민 전체에 적용되며 또 전쟁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통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 조

평시에 있어서 체약국, 그리고 적대 행위의 발발 후에 있어서 적대행위의 당사국은 각자의 영역내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령 지역 내에, 부상자, 병자, 노인, 15세 미만 아동, 임신부 및 7세 미만의 유아의 어머니를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편제되는 병원, 안전지대 및 지점을 설정할 수 있다.

관계국은 적대행위의 발발시 및 적대 행위의 계속 기간 중 그들이 설정한 지대 및 지점을 상호 승인하는데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관계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정을 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협정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의 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러한 병원, 안전지대 및 지점의 설정 및 승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선을 제공하도록 초청된다.

제 15 조

어느 충돌 당사국 일방은 직접으로 또는 중립국 또는 인도적인 기구를 통하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내에 허가자를 차별없이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립지대를 설치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다.

가. 부상자 또는 병자(전투원, 비전투원 불문),

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여하한 군사적 성질을 가진 사업도 수행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관계국이 제안된 중립지대의 지리적 위치, 관리, 식량공급 및 감시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충돌 당사국의 대표자는 문서에 의한 협정을 체결 서명하여야 한다. 동 협정은 지대 중립화의 시기와 존속 기간을 확정해 두어야 한다.

제 16 조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는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군사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각 충돌 당사국은 사망자 및 부상자를 수색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협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충돌 당사국은, 공격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부터의 부상자, 병자, 허약자, 노인, 아동 및 임신부의 철수 및 동 지역으로 향하는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의료 기재의 통로를 위한 지역적 협정을 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항상 충돌 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모든 민간병원에 대하여 그 병원이 민간병원이라는 것 및 그 병원이 사용하는 건물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으로서의 보호를 박탈당할만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민간병원은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의 제네바협약 제 38조에 규정된 표지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군사상의 사정이 허하는 한, 적대 행위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육·공·해군에게 민간병원을 명백히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를 부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병원이 군사목표물에 근접해 있음으로써 노출될 위험에 비추어, 그러한 병원은 가능한 한 그러한 목표물로부터 떨어져 위치할 것이 요망된다.

제 19 조

민간병원이 항유할 수 있는 보호는 그러한 병원이 그 인도적인 임무를 벗어나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 보호는 모든 적당한 경우에 합리적인 기한을 정한 경고를 발하고 그 경고가 무시된 후가 아니면 소멸될 수 없다.

부상자, 또는 병자인 군대의 구성원이 이들 병원에서 간호되고 있는 사실 또는 이들 전투원으로부터 받아들인 소무기 및 탄약이 존재하나, 아직 정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적에게 유해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20 조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의 수색, 철수, 수송 및 간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정규로 또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점령 지역 및 군사작전 지역내에서 상술한 자는, 소지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책임있는 당국의 스탬프를 식별할 수 있도록 날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임무수행중 죄안에 달아야 할 날인된 방수용 완장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완장은 국가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하고 아울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 정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타의 직원도 그들이 고용되는 동안 본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본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존중 보호되며 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신분증명서에는 그들 직원이 종사하는 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각 병원의 사무소는 항상 그들 직원의 최근의 명부를 자국 또는 점령군의 권한있는 당국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를 수송하는 육상의 호송 차량대, 또는 병원 열차, 또는 해상의 특수 선박은 제18조에서 규정된 병원과 동일하게 존중 및 보호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동의를 얻어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서 규정된 특수 표지를 게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22 조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신부의 철수, 의무요원 및 의료 기구의 수송을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모든 관계충돌 당사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 시각 및 항로에 따라 비행하고 있는 동안은 공격되어서는 아니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 항공기는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8조에서 정하는 특수 표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적 또는 적 점령 영역상의 비행은 금지된다.

그러한 항공기는 모든 착륙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착륙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기는 그 승객과 함께 조사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은 후에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 23 조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 비록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에게만 향하는 의약품 및 병원용품, 그리고 종교상의 의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용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15세미만의 아동 임신부에게 송부되는 불가결한 식료품, 피복 및 영양제 등 모든 탁송품의 자유통과를 허가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우려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에서 말한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할 의무를 진다.

가. 탁송품이 그 행선지에 도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리가 유효하게 실시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적이 당해 탁송품이 없으면 자신이 공급 또는 생산하지 않으면 안될 물품의 대응으로 그 탁송품을 충당하거나, 또는 당해 탁송품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용역 또는 설비를 사용치 않게 됨으로써 적의 군사력 또는 경제에 대하여 명백히 이익을 주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탁송품의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그 탁송품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분배가 현지에 있어서의 이익 보호국의 감독하에 행하여 질 것을 그 허가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전기의 탁송품은 가능한 한 신속히 수송되어야 하며 또 탁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가하는 국가는 그 통과를 허가하는데 관한 기술적 조건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 조

총돌 당사국은 전쟁의 결과로 고아가 되었거나, 또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이산된, 15세미만의 아동이 유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의 부양, 종교생활 및 교육이 용이하게 보장됨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들의 교육은 가능한 한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자들에게 위탁되어야 한다.

총돌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한 제 원칙이 준수되리라는 적당한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의 동의를 얻어(만일 그러한 이익 보호국이 있는 경우), 총돌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전시 아동들의 중립국내 수용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총돌 당사국은 또한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명찰의 패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들의 신원을 식별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돌 당사국의 영역 또는 그 점령지역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그들의 가족이 있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엄밀한 사적 성격을 가진 소식을 그들 가족들과 상호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신은 신속히 그리고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정에 의하여 통상 우편으로는 자기 가족과의 서신교환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총돌 당사국은 제140조에 규정된 중앙피보호자정보국과 같은 중립적인 중개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중개기관과 협의하여 특히 각국 적십자사(적 신월사, 적 사자와 태양사)의 협력을 얻어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총돌 당사국이 가족통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자유로이 선택된 25개의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표준서식의 강제 사용과 동 서식에 의한 서신의 회수를 월1회로 제한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제 26 조

각 총돌 당사국은 전쟁 때문에 이산된 가족들이 상호연락을 회복하고 될수있으면 재회하려는 목적으로서 행하는 조회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총돌 당사국은 특히 이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가 자국에서 용인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단체가 자국의 안전보장규칙에 순종하는 한 동 단체의 사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3 편 피보호자의 지위 및 대우

제 1 부 총돌 당사국의 영역 및 점령지역내에 공통되는 규정

제 27 조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제 권리,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특히 모든 폭행 또는 협박, 모욕 및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부녀자들은 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 특히 강간, 강제 매음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외설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피보호자를 그 권력 하에 두고 있는 총돌 당사국은 건강상태, 연령, 종교 또는 성별에 관한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특히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의견에 따르는 불리한 차별을 둠이 없이 모든 피보호자들을 동일한 고려 하에 대우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돌 당사국은 피보호자에 관하여 전쟁의 결과로 필요케 될 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8 조

피보호자의 소재지는 군사 행동으로부터 면제되는 지점 또는 지역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9 조

피보호자를 권력하에 두고 있는 총돌 당사국은 초래될지도 모르는 개인적 책임에 관계없이 자국의 기관이 그러한 피보호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0 조

피보호자는 이익 보호국, 국제 적십자 위원회, 그들이 재류하는 국가의 적십자사(적 신월사, 적 사자와 태양사) 및 피보호자들을 원조하는 기타 단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가진다.

전기의 제 단체는 군사상 또는 안전상의 고려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한의 범위내에서 이 목적을 위한 제반 편의를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억류국 또는 점령국은 이익 보호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표에 의한 제143조 소정의 방문 외에 피보호자들에게 대한 정신적 원조, 또는 물질적 구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단체의 대표들에 의한 피보호자 방문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의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1 조

피보호자 또는 재산자로부터 특히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강제를 가하여서는 안된다.

제 32 조

체약국은 그 권력 하에 두고 있는 피보호자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또는 그들을 학살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 조치를 취함을 금지할 것에 특히 동의한다. 이러한 금지는 피보호자들의 살해 고문 육체적 형벌, 신체의 절단, 그들의 치료상 필요치 않은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에 적용될 뿐 아니라 그것이 민간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군사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거나를 막론하고 기타의 모든 잔학한 조치에도 적용된다.

제 33 조

피보호자는 그 자신이 행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단체별 및 모든 협박 또는 공갈에 의한 조치는 금지된다.

약탈은 금지된다.

피보호자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한 보복은 금지된다.

제 34 조

인질은 금지된다.